

**신구조문대비표**  
**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**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230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	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 12. 24., 타법개정]
<p><b>제34조(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)</b>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</p> <p>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안전·보건에 관한 직무교육</p> <p>3. (생략)</p>	<p><b>제34조(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)</b>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안전보건교육</p> <p>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안전보건 직무교육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7조(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</p> <p>2.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8조의3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<b>제37조(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</p> <p>2.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123조제1항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